

NEWSLETTER

June 2020

조세 그룹
Tax Group

CONTACT



변호사 마옥현

T: 02.6386.6280

E: okhyun.ma@leeko.com

공인회계사 장연호

T: 02.772.5942

E: yeonho.chang@leeko.com

공인회계사 이인수

T: 02.6386.7905

E: insu.lee@leeko.com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확정 발표

2020. 6. 25.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본 정부 추진방안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은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노력 및 이를 위해 여야가 의원 발의한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들을 그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고 소득세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며{집합투자기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22년),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병행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는 것을 주요 세제 개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2,000만 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250만 원)를 적용하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세율구간 체계로

단순화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

4. 과세방법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세율 20%)를 통해 과세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해야 하며,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비적격집합투자기구가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하고 그 수익자에게는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6. 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세수중립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며, 금융투자소득이 부분 시행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 0.02%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0.08%를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가 0.1%p 인하되면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가 됩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_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pdf](#)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